

##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대상물질 및 기준농도

오염물질 항목	미세 먼지 ( $\mu\text{g}/\text{m}^3$ )	이산화 탄소 (ppm)	폼알데 하이드 ( $\mu\text{g}/\text{m}^3$ )	총부유세균 (CFU/ $\text{m}^3$ )	일산화 탄소 (ppm)
다중이용시설					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 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장례식장, 목욕장, 대규모점포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	150 이하	1,000 이하	100 이하		10 이하
의료기관, 어린이집, 노인요양시설, 산후조리원	100 이하			800 이하	
실내주차장	200 이하				

비 고: 도서관, 영화상영관, 학원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,500ppm 이하로 한다.

##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대상물질 및 기준농도

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	이산화질소 (ppm)	라돈 (Bq/m <sup>3</sup> )	총휘발성유기화합물 ( $\mu\text{g}/\text{m}^3$ )	석면 (개/cc)	오존 (ppm)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 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장례식장, 목욕장, 대규모점포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	0.05 이하	148 이하	500 이하	0.01 이하	0.06 이하
의료기관, 어린이집, 노인요양시설, 산후조리원			400 이하		
실내주차장	0.30 이하		1,000 이하		

##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대상물질 및 기준농도

1. 폼알데하이드  $210\mu\text{g}/\text{m}^3$  이하
2. 벤젠  $30\mu\text{g}/\text{m}^3$  이하
3. 톨루엔  $1,000\mu\text{g}/\text{m}^3$  이하
4. 에틸벤젠  $360\mu\text{g}/\text{m}^3$  이하
5. 자일렌  $700\mu\text{g}/\text{m}^3$  이하
6. 스티렌  $300\mu\text{g}/\text{m}^3$  이하